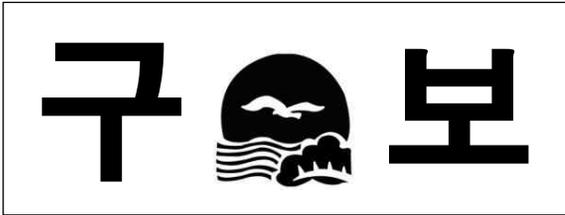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 중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 결	기 관 의 장



제 1318 호

2023년 5월 26일 금요일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-891호 (「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) 3
-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-898호 (지방의회 제출안건 공고) 9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 중구

편집 : 홍보체육실

공 고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-891호

「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5월 26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「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□ 제 정 이 유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□ 주 요 내 용

- 목적,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 ~ 제3조)
- 활성화계획 수립(안 제4조)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(안 제5조)
- 공유재산 임대 등(안 제6조)
- 홍보 등(안 제7조)

□ 의 건 제 출

-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(참조 : 안전관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(산업에너지팀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

※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

- ▶ 주소 : (우22315)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(신포동)
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과(산업에너지팀)
- ▶ 전화 : 032)760-7387 [fax 032)760-7809]

4.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충전시설”이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활성화계획 수립)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(이하 “활성화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
3. 충전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고,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공유재산 임대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「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 등)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부서용]

부서별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부서별(실·과) 의견			
협의개요	실·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
[주민용]

의견수렴서

의견제출자 인적사항
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연락처	

의견제출 내용

제출인 : (인 또는 서명)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-898호

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출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출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-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
-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
-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-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
-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
-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
-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
-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
-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

2023년 5월 26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